

##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### □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

현 행	개 정 (안)	사유
<p><b>제2조(평가기준)</b> ③시공경험,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5.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라.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[별표] ‘2’ ‘주2) 경영상태 평가방법’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.</p> <p>마. ‘라’ 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.</p> <p>1)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</p> <p>2)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[별표 9]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</p> <p>바. ‘마’ 목의 ‘2.’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「<a href="#">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a>」(이하 “외감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<a href="#">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[별표 10]</a>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조(평가기준)</b> ③시공경험,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5.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라.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[별표] ‘2’ ‘주2) 경영상태 평가방법’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.</p> <p>마. ‘라’ 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.</p> <p>1)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</p> <p>2)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[별표 9]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</p> <p>바. ‘마’ 목의 ‘2.’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「<a href="#"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a>」(이하 “외감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<a href="#">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[별표 10]</a> 또는 <a href="#">한국공인회계사회의 「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」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[별표 10 준용]</a>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업무 개선</p>
<p>[별지 #3] &lt;개정 2019.12.18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3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○ 신인도(±0.9)</p> <p>-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</p>	<p>[별지 #3] &lt;개정 2020.3.18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</p> <p>1. 수행능력 평가(3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○ 신인도(±0.9)</p> <p>-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</p>	

현행			개정(안)			사유
평점×18/100 - 전문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<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>			평점×18/100 - 전문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< 신인도 평가 >			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
구분	심사항목	배점한도	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
일자리 창출기업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에 따름		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
				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
일자리 창출기업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에 따름	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(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	
		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	
[별지 #4]<개정 2019.12.18>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(전문공사 및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  1. 수행능력 평가(30점) (생략) ○ 신인도 (+4점) -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			주) 사전심사기준 [별표 3] 신인도평가 주 2)는 적용하지 않는다. [별지 #4]<개정 2020.3.18>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(전문공사 및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)인 공사의 평가기준  1. 수행능력 평가(30점) (생략) ○ 신인도 (+4점) -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,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			

현행			개정 (안)			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심사항목</th> <th>배점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자리 창출 기업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에 따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</td> <td>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</td> <td>(+1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심사항목	배점한도		일자리 창출 기업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에 따름		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(+1)	<p>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인도 평가 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심사항목</th> <th>등급 및 평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건설재해 및 제재처분</td> <td>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최근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일자리 창출기업</td> <td>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(건설근로자 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</td> <td>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</td> <td>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</td> <td>+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) 사전심사기준 [별표 3] 신인도평가 주 2)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		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최근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(건설근로자 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
구분	심사항목	배점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자리 창출 기업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(+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심사항목	등급 및 평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재해 및 제재처분	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2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근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다.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’ 1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자리 창출기업	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(건설근로자 공제회발표)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4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자리창출 실적(고용인력 증가 등)이 확인되는 자	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‘바. 일자리창출 관련’ 25)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	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	+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